

출석인정요청서

※ 출석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

대 학		학 부(과)		학 년		
학 번			성 명	(인)		
교과목명			담당교원			
기 간	년 월 일 ~		년 월 일			
구 분 (학사규정 제47조)			사유 선택	기 간	증빙서류	
병결 등	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(입원 등),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		☐	총 수업시수의 1/4 이내 인정	진단서, 소견서, 본인이름이 기재된 진료기록 관련 서류 중 택 1	
	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(월1일에 한함, 학기당 4일 이내)		☐			
* 병역	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(의무복무기간 제외)		☐	해당 기간	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, 기타 병역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중 택 1	
* 실습 등	학술답사, 견학, 수학여행, 교육실습, 현장실습 등		☐	해당 기간	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	
경조사	결혼	본인	☐	5일	청첩장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	
		자녀	☐	1일		
	출산	본인	☐	20일	출생증명서	
		배우자	☐	10일		
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☐	5일	장례확인서, 사망관련증명서류 중 택 1
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	☐	3일	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	☐	3일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	☐	1일	
	*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					
	재직자	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 (과목당 총 6시간 이내. 과제물 제출 필수)		☐	해당 기간	관련 증명서류 및 과제물
* 체육 특기자	체육특기자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따름		☐	관련 세칙에 따름	체육실장이 발급하는 출석인정원	
졸업 예정자	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		☐	해당 기간	수험표, 기타증빙서류 중 택 1	
기타	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 참가		☐	해당 기간	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 (학생 인적사항 공문에 기재)	
- 학생은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- * 는 해당기간 인정 - 생리병결은 월 1일 출석인정 요청한 요일 교과목만 인정 됨						
출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
※ 교과목 담당교원은 출석부와 함께 본 출석인정요청서(증빙포함)를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